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2. 4. 16
- 나. 제출자 : 사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02. 4. 16(의안 제 19호)
- 라. 심사일자 : 제64회사천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2.4.25)

2. 제안이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군 제3218부대에 직접 공급하는 급수를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일원화 협약에 의거 우리 시에서 공급토록 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공군 제3218부대의 수도 급수는 현행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역 정수요금의 의해 공급하고 있으나,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일원화 협약에 따라 우리 시의 요금 체계에 의거 공급함에 따른 요금격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차등 인상하여 수도요금의 형평성을 도모코자 함(안 제32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개정안은 98년부터 추진하여 오던 개별수요자에 대한 용수공급체계 개선 계획 협의가 공군 3218부대와 타결되어, 이에 대한 요금 징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 요금의 내용이 수시 변경될 수 있고, 산정 방법도 복잡하여 조례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요금을 앞으로 5년간 차등 인상한다는 협약서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음.
-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본 바 집행부의 안에 타당성이 있고,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의결